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
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
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립·시행하는 주민 지원대책 중 공공기관 건물 등의 관리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대통령령 제 호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
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제3항 중 “정한다”를 “정하되,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중심복
합도시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의 소독·청소
· 경비·시설관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서 조례
로 정하는 사업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의2(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) ① · ② (생 략)	제28조의2(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립 · 시행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민지원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로 정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정 하되,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에 따 른 공공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 의 소독 · 청소 · 경비 · 시설관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 행할 수 있다.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686